

#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715,610,621	21,468,319
일반회계	611,933,566	18,358,007
특별회계	103,677,055	3,110,312
기타특별회계	103,677,055	3,110,31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470,403	194,112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77,165,346	2,314,960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01,183	21,035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86,879	26,60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72,600	5,178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214,000	156,42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640,000	19,20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2,426,644	372,79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